

■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5. 12. 19.>

수상구조사 교육과정(제12조의7제1항 관련)

(단위: 시간)

과 목		강의 및 실습 시간	
		수상구조사 1급	수상구조사 2급
1. 수상구조사의 자세 (이론)	가.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	1	1
	나.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	1	1
	소계	2	2
2. 조난사고의 이해 (이론)	가. 재난상황의 이해	1	1
	나. 조난사고 다발지역 분석	1	1
	다.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		
	라. 안전사고 예방·순찰 활동	2	2
	계획 수립 및 점검	2	
	마.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	2	
소계	8	4	
3. 관련 법령(이론)	가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	0.5	0.5
	나. 「선박안전법」	0.5	0.5
	다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	0.5	0.5
	라. 「수상레저안전법」	0.5	0.5
	소계	2	2
4. 응급처치(이론 및 실습)	가. 기본 응급처치술(이론 및 실습)	5	5
	1) 이론(2시간):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		
	2) 실습(3시간): 환자평가, 심 폐소생술(성인, 소아, 영아), 기도폐쇄처치, AED 사용법		
	나. 외상환자 응급처치(이론 및 실습)	5	5
1) 이론(2시간): 출혈, 쇼크, 척추손상 환자처치, 환자 고정 및 운반			
2) 실습(3시간): 상처 드레싱, 부목 고정 등			
다. 응급의료 장비 사용(실습):	3		

	환자 고정 및 운반법, 수상 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 처치 장비 사용법		
	소계	13	10
5. 구조기술(실습)	가. 구조영법(머리들고 자유형, 평영, 구조횡영, 구조배영)	7	6
	나. 수영구조, 장비구조(레스큐 튜브)	8	7
	다. 선상안전과 비상대응(구명 뗏목, 퇴선방법)	7	
	라. 부상자 구조법	4	
	마. 생존수영	5	5
	소계	31	18
6. 종합구조 (실습)	가. 종합구조(구조방법 등 반복 교육)	6	4
	나. 로프사용법, 매듭법	2	
	소계	8	4
	계	64	40

※ 비고

1.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2. 교육과정 1회당 교육대상자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3. 교육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라목에 따른 보조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.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 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: 제2호에 따른 조난사고의 이해(이론)
 - 나. 응급구조사, 의사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: 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(이론 및 실습)
5. 제4호의 응급처치 과목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,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,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6. 제5호 및 제6호의 구조기술 및 종합구조 과목 중 수영 관련 실습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초 수영능력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기초 수영능력이 인정되는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.
 - 가. 자유형, 평영이 각 50m 이상 가능할 것

나. 잠영이 10m 이상 가능할 것

7.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, 장비구조(레스큐튜브) 실습은 가로 길이 10미터,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.
8.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멍뿔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멍뿔목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,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.